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15 선고 2021가단1480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5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49,830,438원 및 그중 24,766,081원에 대하여 2021. 11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20. 5. 31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재은

별지